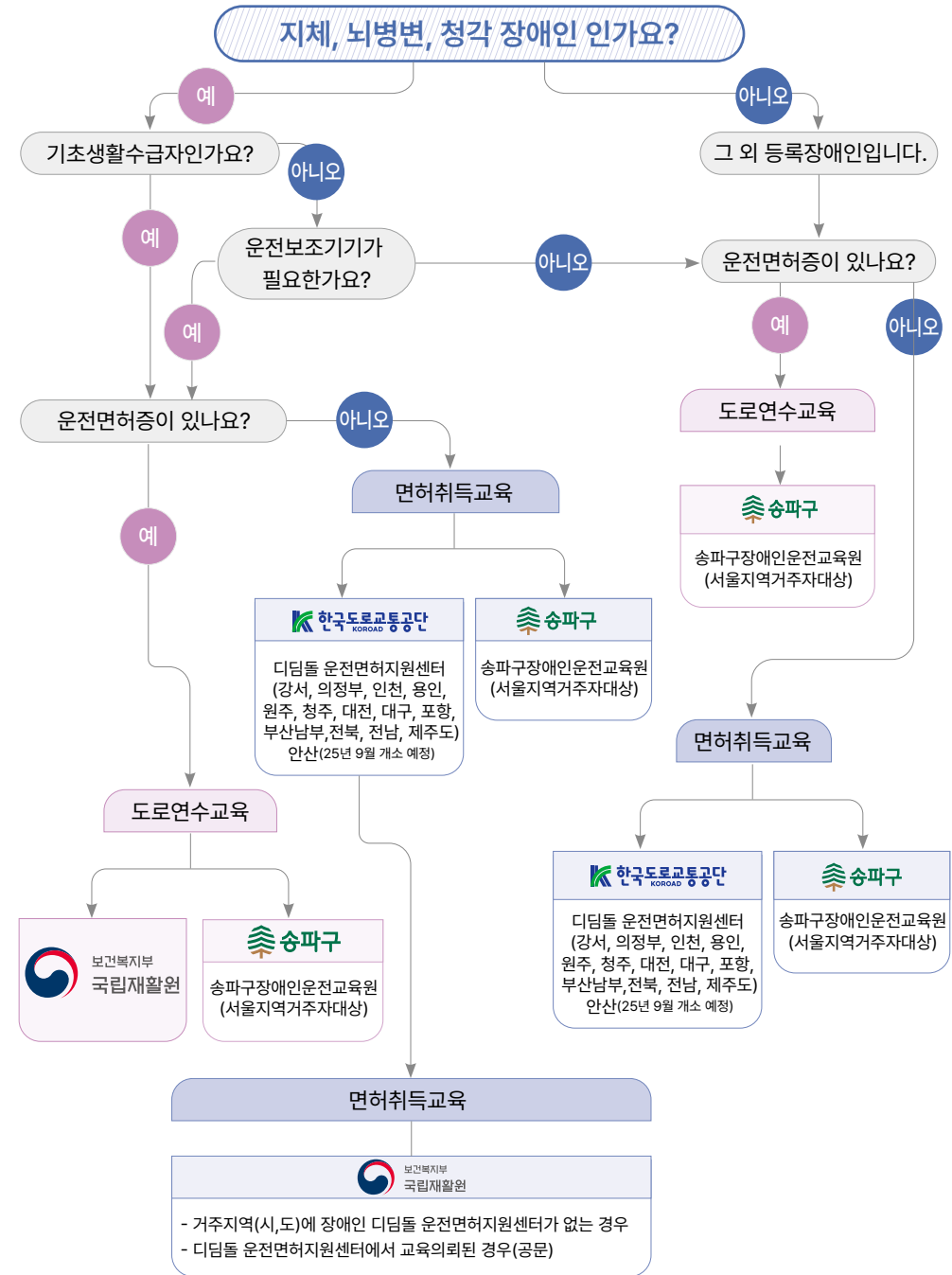


차종	사진	자동차보조기기
엑센트 (승용, 자동) 제2종 보통 자동		① 볼록거울, 우측핸드컨트롤러, 좌측가속페달, 우측방향지시기, 고정식트랜스퍼 보드 * 일부차량 : 크레인 지붕형(체어타퍼), 스위치 일체형 핸들봉
베뉴 (승용, 자동) 제2종 보통 자동		볼록거울, 우측핸드컨트롤러, 좌측가속페달, 우측방향지시기, 고정식트랜스퍼 보드
아반떼 (승용, 자동) 제2종 보통 자동		볼록거울, 우측핸드컨트롤러, 좌측가속페달, 우측방향지시기, 고정식트랜스퍼 보드
소나타 (승용, 자동) 제2종 보통 자동		볼록거울, 우측핸드컨트롤러, 좌측가속페달, 우측방향지시기, 고정식트랜스퍼 보드 * 일부차량 : 크레인 지붕형(오토박스), 스위치 일체형 핸들봉, 크레인 후방형(원체어)
아이오닉5 (승용, 자동, 전기) 제2종 보통 자동		볼록거울, 우측핸드컨트롤러, 좌측가속페달, 우측방향지시기, 고정식트랜스퍼 보드
포터 (화물, 자동) 제1종 보통 자동		볼록거울, 좌측핸드컨트롤러, 좌측가속페달, 우측방향지시기, 좌측브레이크
포터 (화물, 수동) 제1종 보통		볼록거울
카니발 (승합, 자동) 제1종 보통 자동		• 우측핸드컨트롤러, 전동 주차브레이크 • 전자식 변속기 • 측면 자동경사로 휠체어 수동·자동 고정장치 • 핸들·브레이크 저감장치 • 버튼식 세컨더리 컨트롤러 • 전동고정식 트랜스퍼 보드
공통		핸들봉, 확장페달 탈부착식(8cm), 이동식 트랜스퍼보드



1. 장애인 운전교육 목적 및 과정

▪ 교육 목적

사회참여·취업 등을 위해 운전교육이 필요하지만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특수차량 및 수어로 교육 가능한 전문강사의 부재**로 민간 운전학원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 교육 방법

국립재활원에서는 신체 기능 장애에 적합한 운전교육 차량과 장애인 운전교육 전문 강사가 교육 신청자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 및 주변 도로에서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실시합니다.

2. 교육 대상(공통 조건)

-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중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인으로 면허조건 E,F,G,H,I를 부여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가능

지체, 뇌병변 청각	청각	지체, 뇌병변				
1.□	2.□	3.□	4.□	5.□	6.□	7.□
기초생활 수급자	40데시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	짧은 다리로 운전	양손으로만 운전	사지마비와 같은 신체기능 장애	오른손으로 방향 지시기 작동	원발로 운전
면허조건 없음	면허조건 E	면허조건 A	면허조건 F	면허조건 G	면허조건 H	면허조건 I
						
	볼록거울	확장페달	핸드 컨트롤러	특수개조 제작·승인차	우측 방향 지시기	좌측 가속 페달

▪ 교육 내용 및 과정별 신청서류 준비 순서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 도로연수교육 (10시간/5일 이내)	① (병원) 운전인지능력평가(뇌병변만 해당) ※ 평가병원 4.운전인지능력평가(CPAD) 병원안내 참조 ② (운전면허시험장) 면허조건 발급(조건이 없는 경우) ③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접수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자동차보조기기평가 (1시간/원내)	해당없음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 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우선 교육 후 연계 가능 ※ 거주지역에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없는 경우 바로 연계	
- 장내기능교육 (8시간/4일 이내)	①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장애인운전능력측정검사)→학과시험 ②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접수
- 도로주행교육 (10시간/5일 이내)	①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 합격증 ②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접수

3. 운전교육 및 신청방법

▪ 운전교육

- 교육방법: 교육신청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특수차량과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실시
- 교육지역: 전국
- 교육비용: 무료
- 상담방법: 전화상담 ☎ 02-901-1553(1552~6)

▪ 신청방법

- 카카오톡 접속방법 ※ 상담 가능시간: 평일 08:30~17:30 (점심시간, 공휴일 제외)

방법1. QR코드 바로가기



방법2. 카카오톡 검색하기



검색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

- 신청서 다운로드: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 교육지원 ▶ 교육신청 ▶ 장애인운전교육

▪ 신청서류 제출

- Fax: 02-901-1550
- 전자우편(이메일): nrc1550@korea.kr
- 방문: 국립재활원 아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사무실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25년도 하반기 시행예정

▪ 교육시간

- 평일 (오전) 10:00~12:00, (오후) 14:00~16:00
- 공휴일 제외(토·일·국경일 등)
- ※ 장내기능교육은 교육장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운전인지능력평가(CPAD) 병원안내

- ※ 유효기간 : 교육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평가 결과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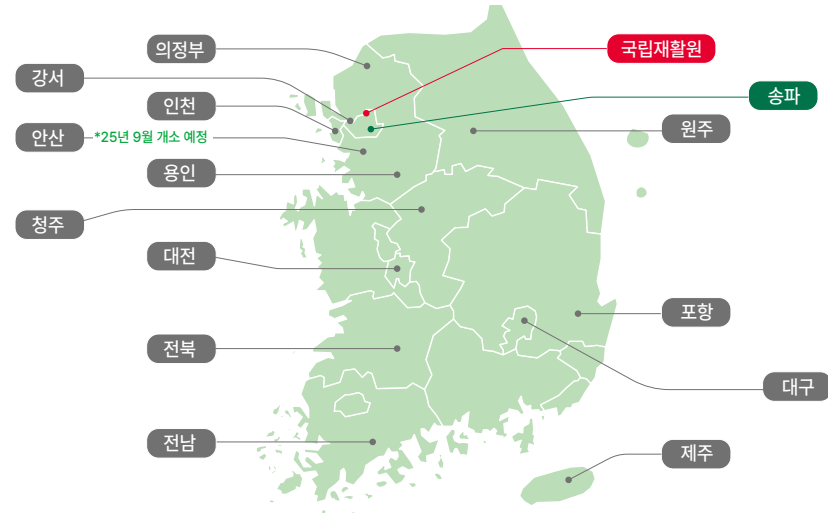
▪ 권역재활병원

(서울)국립재활원	02-901-1705~6	(강원도)강원도재활병원	033-248-7626
(경북)경북권역재활병원	053-230-8800	(경남)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4000
(대전)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1599-1723	※ 대전과 경남은 3차 병원으로 1,2차 병원 진료의뢰서 필요	

▪ 기타재활병원

(서울)서울재활원	02-6020-3100	(경기)국립교통재활원	031-580-5555
(부산)해운대나눔과 행복병원	051-726-7575	*입원환자만 평가	

무료 장애인 운전교육 기관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국립재활원	-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인으로 면허조건 E, F, G, H, I를 부여받은 자 -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제1종 보통 자동, 수동 ▶제2종 보통 자동 <취득 과정> - 장내기능교육: 8시간/4일 이내 - 도로주행교육: 10시간/5일 이내 <연수 과정> - 도로연수교육: 10시간/5일 이내	02-901-1553(1552~6)
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 등록장애인 - 국가 유공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제1종 보통 자동, 수동 ▶제2종 보통 자동, 수동 ▶제1종 대형은 일부 센터만 가능 <취득 과정> -학과 교육: 2시간 -장내기능교육:8시간 -도로주행교육:10시간	서울 강서 02-2669-2955 (연) 경기 용인 031-289-0180 (연) 인천 032-810-2374 (연) 대전 042-250-3367 (대) 대구 053-320-2406 부산 남부 051-610-8087 (대) (연) 전북 전주 063-210-3855 전남 나주 061-339-1577 (연) 제주 제주 064-710-9233 (대) 강원 원주 033-737-0646 (대) 경기 의정부 031-850-8705 충북 청주 043-290-0909 경북 포항 054-290-9381~2 (연) 경기 안산 031-490-2870 *25년 9월 개소 예정 (대): 대형면허 교육 가능 (연): 별도 연습장 점심시간 이외 교육 가능 (연): 대형 연습장 점심시간 이외 교육 가능
송파구 장애인 운전교육원	- 서울시 등록장애인	▶제1종 보통 자동 ▶제2종 보통 자동, 수동 <취득 과정> - 장내기능교육: 14시간 - 도로주행교육: 14시간 <연수 과정> - 운전적응교육: 10시간	02-412-2486

※ 누락되거나 변경된 정보가 있을 수있으니, 해당 기관에 확인 필요

자동차 보조기기 관련 정부지원제도 안내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공무원 ◦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 공단에 등록된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1인 1,500만원 (중증 2,000만원)이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 1인 중증 장애인 사업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제품 ◦ 1인 500만원 이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품목에서 자동차보조기기 신청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산재보험급여 재활보조기구 지급	◦ 산재보험 가입자 (산업재해 장애인)	◦ 이동기기 (이동식리프트, 멀티리프트)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보철구지급사업	◦ 상이등급 1급2항, 1급3항 2급 중 별도 분류번호와 적용 대상에 적합할 경우	◦ 오토박스 ◦ 트랜스퍼 보드	국가보훈부 1577-0606
경기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보조기기 지원사업	◦ 경기도 거주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자동차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1인 1개 품목 150만원 이내	경기도 내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 경상북도 거주자 지체, 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승하차보조기기 8종 ◦ 1인 최대 1,000만원 (소득 기준별 자부담 20~50%)	경상북도 보조기기 센터 053-850-5800

※ 누락되거나 변경된 정보가 있을 수있으니, 해당 기관에 확인 필요

